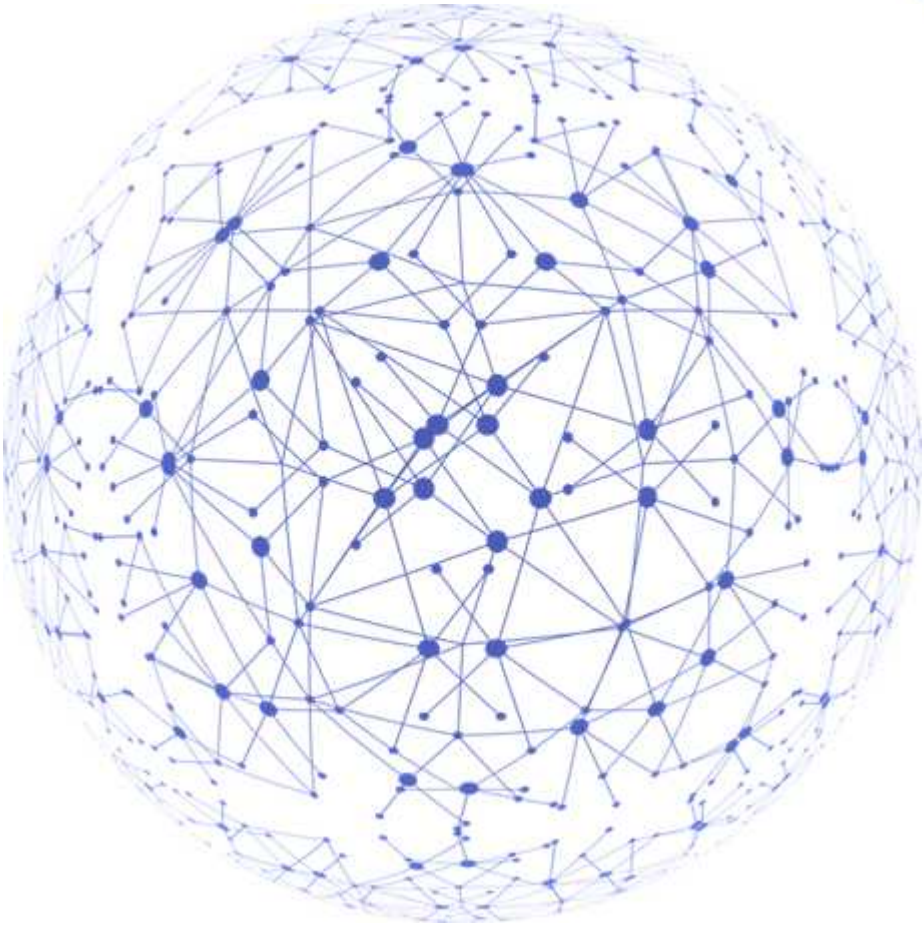

2020

국방조달시장 진출가이드북

폴란드

Polish Defense Market Entry Guidebook
(2rd Revision)

국방기술품질원
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개정 2판

폴란드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2020. 10.

국방기술품질원
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 요 약 문

- 해외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중소방산기업의 해외진출 증진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국방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8월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UAE, 오만, 이라크)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을 신규 작성하였으며, 기존에 발간하였던 12개국(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사우디, 이란, 케냐, 보츠와나, 멕시코, 알제리, 폴란드, 노르웨이, 스페인)의 가이드북 또한 발간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였으며 국가별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폴란드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은 2016년 11월 첫 출간 이후 2020년 1차 개정되었으며,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한 2차 개정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각 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국가 개요나 방위산업 시장 전반에 관한 정보보다는 해당국의 국방조달제도 및 관련 조직, 입찰 절차 및 전자입찰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였습니다.

- [Chapter 1. 국방조달제도]에는 폴란드의 국방획득기조와 EU 및 자체 조달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군현대화계획에 따른 폴란드의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의 방형성과 2020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에 따른 중점국방획득분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폴란드 조달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 [Chapter 2. 국방조달체계]에서는 폴란드가 EU회원국으로서 따르고 있는 유럽연합(EU)법률,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346조, 2009/81/EC지침 – EU 방위안보조달 지침과 자체조달관련 법규인 공공조달법, 국방부 장관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국방획득프로세스 및 국방조달체계내 군비검증단의 임무를 추가하였습니다.

-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에서는 국내 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공개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되고자 입찰 단계별 참여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 및 검색방법을 안내하여 국내 기업들이 조달사이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 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은 외교부/KOTRA 국가별 개황, IHS Jane's, SIPRI, Forecast International, Global Data, 자체 연구용역 「주요 수출대상국 입찰제도 및 글로벌 방산부품 공급망 진입전략 연구(2020. 4.)」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 목 차 례

Chapter 1. 국방조달제도 ····· 3
1-1. 조달정책 ····· 3
2020 해외 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_폴란드Chapter 2. 국방조달체계 ···· 9
2-1. 국방조달 조직 ····· 9
2-2. 의사 결정 절차 ····· 10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 ····· 15
3-1. 입찰 참여 절차 ····· 15
3-2. 전자입찰시스템 ····· 21

Chapter 4. FAQ ····· 25

[부 록]
1. 시장 진출 환경 ····· 29
2. 한국과 폴란드 국방조달체계 비교 ····· 31
3. 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 ····· 34

표 차 례

[표 1] 폴란드 국방비 현황 및 GDP 대비율 ····· 30

[표 2] 폴란드 예산항목별 국방비 지출 현황 ····· 30

[표 3] SWOT 분석 결과 ····· 31

[표 4]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 34

[표 5] 수출허가 제출 서류 목록 ····· 35

그 림 차 례

[그림 1] 폴란드 국방부 조직도 ····· 9

[그림 2] 폴란드 군비검증단 조직도 ····· 10

[그림 3] 폴란드 국방 획득 프로세스 ····· 11

[그림 4] EU 공공조달전자체계 홈페이지 ····· 21

[그림 5] 공공조달청 공공입찰 공고화면 ····· 22

[그림 6]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 34

[그림 7] 수출 통제/허가 처리 절차 ····· 35

[그림 8]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상세 절차 및 수행 기관 36

[그림 9]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 37

Chapter 1

국방 조달 제도

1. 조달 정책
2. 조달 법규

▬ Chapter 1. 국방조달제도

1. 조달 정책

가. 국방획득전략 기조

○ 폴란드는 군현대화계획(Technical Modernisation Programme, TMP)에 따른 장기적 군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군현대화계획에 따라 2013년 2022년 기간 동안 400억 미국달러의 국방예산을 배정하였다. 2016년, 계획에 대한 중간검토를 국방부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부터 2026년 기간 동안 50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재검토안이 통과되었다.

○ 군현대화계획에 따라 F-35 전투기 신규 배치, F-16 전투기 추가 배치, 무인기, 방공무기, 정찰체계, 지상전투체계, 회전익체계, 잠수함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 또한 폴란드는 2014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를 대체하기 위한 2020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했다. 전략서는 향후 폴란드의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 2020년 국가안보전략서[1)]

○ 2020년 국가안보전략서는 ❶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Security of the State and its Citizens) ❷ 폴란드의 국제안보체제 (Poland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❸ 폴란드의 정체성과 유산(Identity and National Heritage), ❹ 사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Envrironment Protection)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이번 2020 국가안보전략 문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폴란드의 전통적 안보위협인 러시아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한 국제테러조직 및 남유럽의 불안정성을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폴란드 정부는 2020년 총 GDP의 2.1% 수준인 국방예산을 2024년까지 총 GDP의 2.5% 규모로 증액할 것임을 2020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밝혔다.

○ 또한,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폴란드 정부는 군 현대화가 시급한 4개 무기체

1) Defence24.com, "President signs the polish national security new threats back to the roots commentary."(2020.5.14.)

계 분야를 명시하였다. 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기동무기체계 : 비대칭전력을 활용하는 국제테러조직 대응을 위해 폴란드군의 기동성 증대
- 지휘통제체계 : 남유럽 지역 등에서 확대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및 관리
- 방공무기체계 : 현재 Raytheon사와 진행 중인 Wisla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A2/AD전략 다층화
- 대전차 유도무기체계 : 러시아의 차세대전차 전력 증강에 대응

2. 조달 법규

가. EU 조달 법규

○ 폴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타 회원국과 동일하게 유럽연합(EU) 법률,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346조, 2009/81/EC지침- EU 방위안보조달 지침을 따르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으로 공공조달법, 국방부 장관 지침 등을 따른다.

○ [유럽연합(EU) 법률] 유럽연합(European Union : 이하 EU)의 공공조달 정책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총괄국(Directorate-General Growth)이 관할하며, 동 정책은 EU라는 공동시장에서 공공조달관련 발주처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공공구매 제도를 규율한다.

- 이에 따라 EU회원국은 EU법률의 파생 법규로 정해진 특별법(EU지침서)을 회원국의 국내제도에 도입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공공조달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서는 입찰의 투명성, 공개경쟁입찰, 수주 및 계약 체결 절차의 적절한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음

○ [2009/81/EC지침]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2009년 7월 13일 제정한 EU의 방위안보조달 지침으로서 군사장비 공급, 민감한 군사장비 부품 공급, 군사와 관련된 직접 공사, 물품 공급 및 용역서비스, 특별한 군사 목적의 공사 및 서비스 또는 민감한 공사 및 서비스에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범위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346조에 규정되어 있음

○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346조] 국방 및 안전 분야에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원칙(평등 대우 원칙과 공공조달의 경쟁)에 있어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회원국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내 국방조달은 위에 언급된 2009/81/EU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조치는 EU 내부시장 입찰경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제346조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이익이라는 범위로 제한되어있으며, 1958년에 작성된 군사장비 목록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목록은 1958년 4월 15일에 채택되었지만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나. 국방조달 법령

○ [공공조달법] 폴란드 공공조달 시스템에는 국방 및 안전 분야 조달의 별도 제도가 있으며, 군사장비, 민감한 장비, 이와 관련한 공사, 물품 공급 및 서비스, 특별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공사 및 서비스, 그리고 민감한 공사 및 서비스 구매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국방부장관 지침] 공공조달 법규를 제외하고, 즉 유럽연합 기능 조약의 제 346 조 아래 진행되는 입찰절차는 2015년 9월 14일 국가 안전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국방부 공공조달에 관한 국방부 장관 결정 367/MON번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 원칙적으로 군사 장비 조달은 공공조달 법률에 근거해야 하나, 조달이 국가 보안의 기본 이익 보호와 연관되는 특별한 상황에 본 법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공공조달은 국가 안전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국방부 공공조달에 관한 2015년 9월 14일 국방부 장관 지침(367/MON)에 따름

다. 국방 절충교역 제도[2)]

○ EU는 2009년 EU 국가 간의 절충교역 관련 법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 기능 조약의 제346조에 따라 자국의 정책에 의해 절충교역을 시행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하였다.(유럽연합 기능 조약의 제346조)

○ 코모로브스키 대통령은 2014년 7월 7일 새로운 절충교역법에 서명, 1999년 국방안보관련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보상법을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대형 국방조달사업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 새로운 절충교역법에 따라 국방조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조달 물품에

2) IHS Jane's 14 September 2016과 KOTRA 수집자료 (폴란드 2016년 9월 30일 기준)를 종합하여 작성

대한 기술의 이전까지 전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절충교역의 핵심은 공공기금이 해외 제조사로부터 무기 및 장비를 구매할 경우 국방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며, 해외 공급자는 국방산업 투자 같은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절충교역 법에는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절충교역 법의 제7조에 따라서 절충교역 계약은 해외 공급자의 절충교역 제안을 기반으로 협상 진행 후 체결함
- 절충교역제안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서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함 (절충교역법의 제8조 제5항)
- 발주처가 선택한 해외 공급자는 절충교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과 협상을 진행함 (절충교역 법의 제8조 11항에 따라서 공급 계약은 절충교역 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될 수 없음)

❍ 향후 진행되는 국방 관련 계약에서 핵심적인 조건은 해당 제품이 최대한 폴란드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는 핵심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하거나, 해당 전략물자의 사후 서비스, 수리, 현대화 부문을 폴란드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폴란드의 절충교역 목록은 폴란드 개발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 홈페이지 : https://www.mr.gov.pl/strony/zadania/bezpieczenstwo-gospodarcze/offset/#Umowy offsetowe.

Chapter 2

국방 조달 체계

1. 관련 조직
2. 의사 결정 절차

▬ Chapter 2. 국방 조달 체계

1. 관련 조직

가. 국방조달 조직

○ 폴란드 국방 조직은 국방장관예하에 방위력개선업무를 담당하는 획득차관(1차관)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국방총참모장이 편성되어 있다.

○ 실질적인 조달·획득 관련 사업추진 업무는 국방부 산하 군비검증단(Armament Inspectorate, AI)에서 담당한다.

- 국방부 및 각 군의 획득조직을 통합하여 2010년 군비검증단으로 획득 업무를 일원화함
- 군 소요 검증, 사업전략 수립, 선행연구, 시장조사, 사업관리 및 계약 등 국방획득업무의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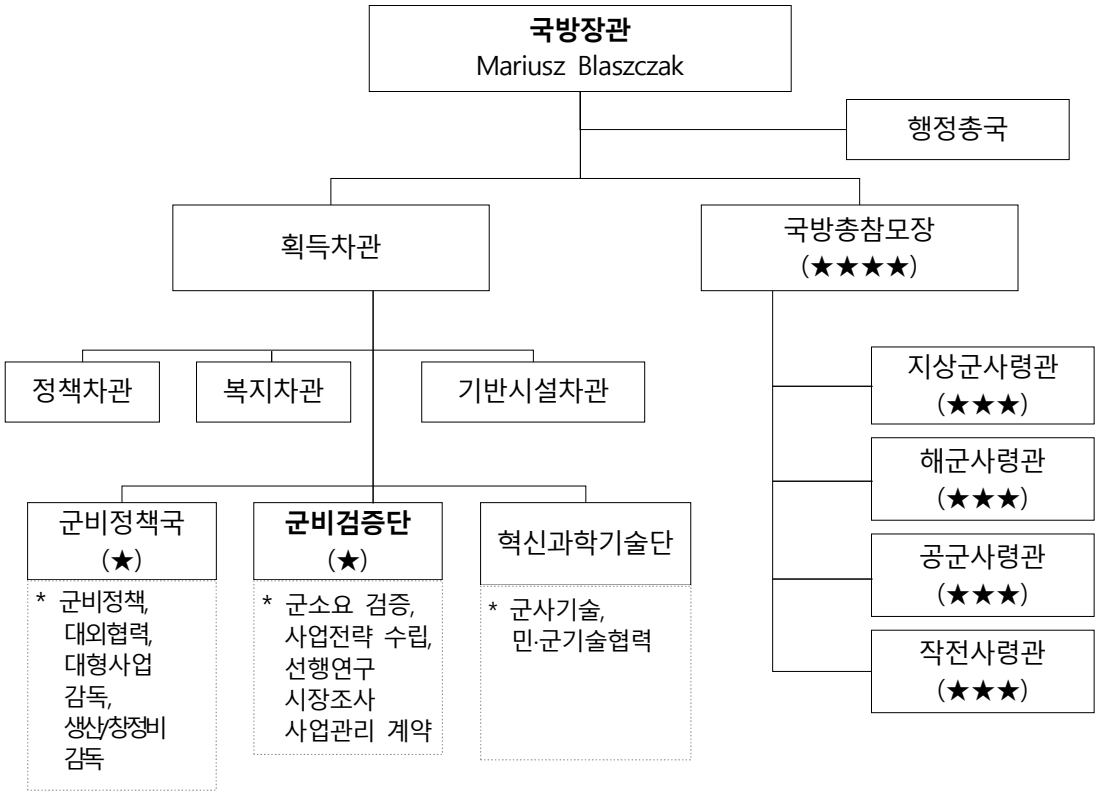

[그림 1] 폴란드 국방부 조직도

○ 군비검증단의 주요 임무는 국방획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군 소요 검증 및 타당성조사
-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사업관리 및 계약
- 시험평가

○ 군비검증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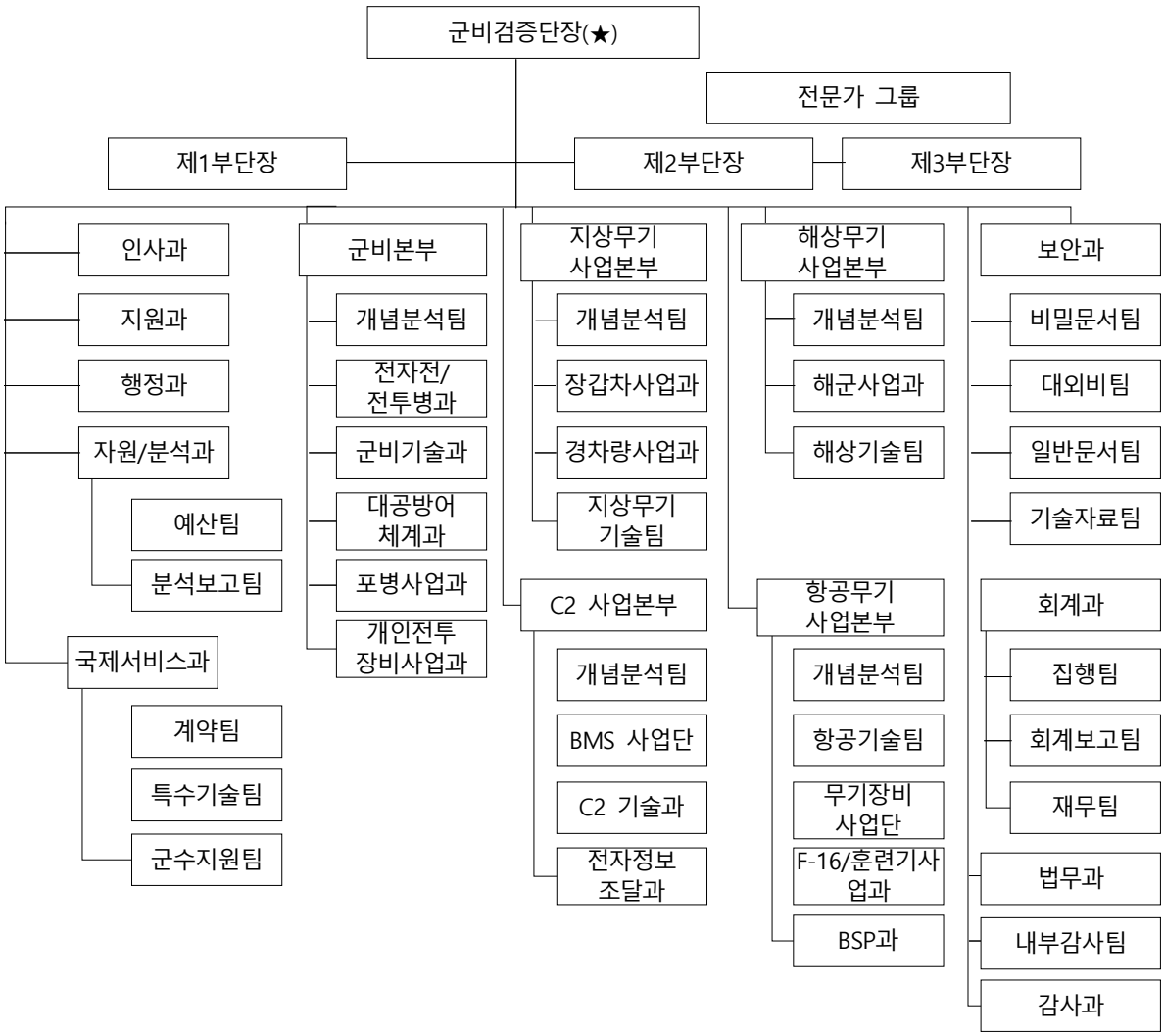

[그림 2] 폴란드 군비검증단 조직도

2. 의사결정 절차

가. 국방획득 프로세스

○ 폴란드는 EU 및 유럽방위청(EDA : European Defence Agency) 회원국으로서 국방획득 시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 장관지침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 폴란드의 국방조달 절차는 투명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소요제기
(2) 소요결정
(3) 선행연구
(4) 입찰공고
(5) 제안서 평가
(6) 사업관리 및 계약
(7) 사업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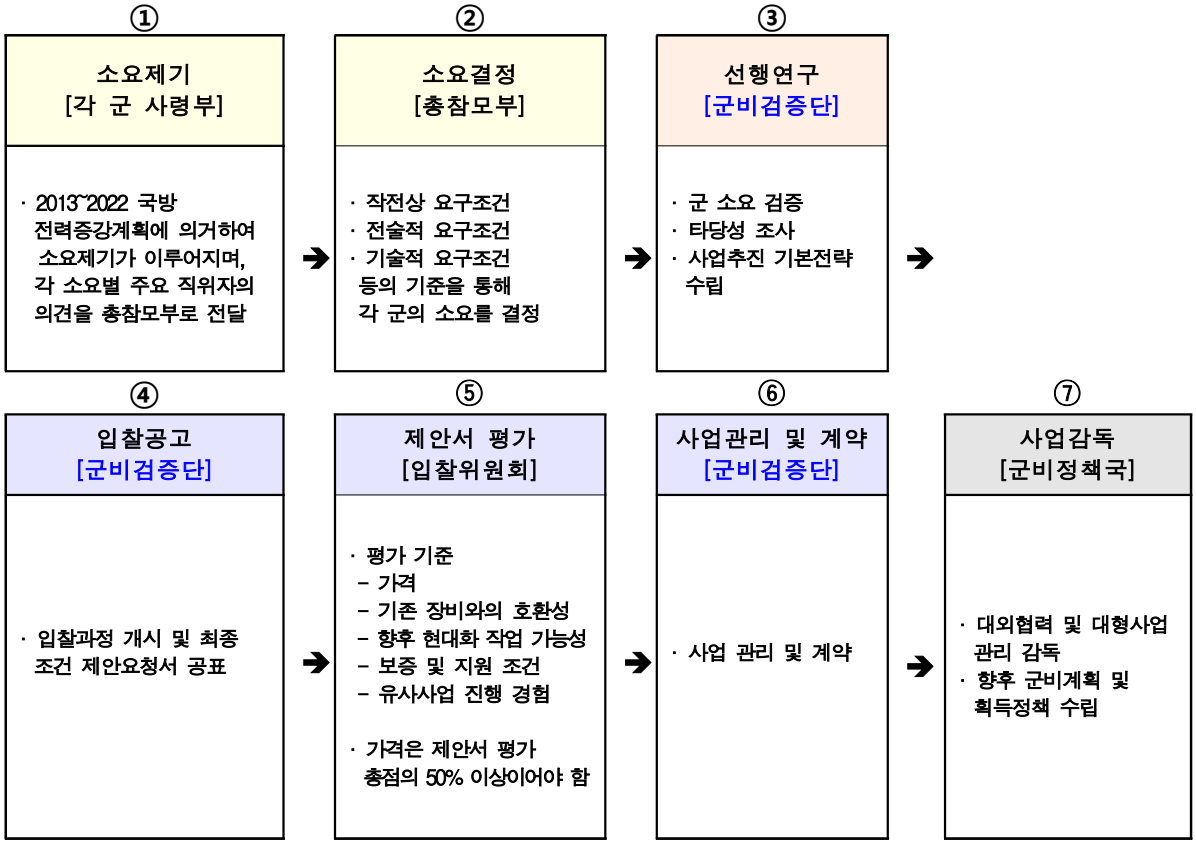

[그림 3] 폴란드 국방 획득 프로세스

나. 국방획득 의사결정 과정

○ 국방획득에 있어 의사결정은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군 고위급 간부 및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찰위원회'에서 입찰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 국방부 장관지침(367/MON)에 의거 입찰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함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

1. 입찰참여절차
2. 전자입찰시스템

▬ Chapter 3. 입찰 프로세스

1. 입찰 참여 절차[3)]

가. 입찰자격

❍ [영업권] 폴란드에서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영업권을 취득해야 한다.

❍ 영업권 발급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법원등록소에 지급 불능 채무자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
- 영업권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적합하게 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기술적 및 구조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제출한 기업 - 소견서는 권한 기관(경제부 장관의 시행령에 제시된 목록에 포함된 기관), 예를 들어서 소재지(Sulejowek)의 군사 장갑 및 차량 기술 기관(폴란드: Wojskowy Instytut Techniki Pancernej i Samochodowej w Sulejowku)이 발급함

❍ [영업권 취득 조건] 영업 해당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경제주체가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명의 이사 임원 또는 한 명의 이사 임원과 회사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폴란드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스위스 연방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국(EFTA) - 유럽경제지역 (EEA) 조약국의 시민, 또는 폴란드에서 영주허가 또는 유럽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한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서,
- 만 25 세 이상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하고 완전한 법률행위 능력을 갖춘 자
-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또는 조세 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 판결을 받지 않은 자
-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또는 조세 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자.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경제 활동 수행 및 총괄하는 직업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
- 정신적인 장애가 없으며 정신 기능의 중요한 장애가 없어야 함. 이에 따라 정신 및 심리 건강 검진에 관한 건강 진단서와 정신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3) KOTRA 수집자료 (폴란드 2016년 9월 30일 기준)

○ 영업권 취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입증하려면 신청서 제출 시 영업권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기술 및 장비는 소방, 위생 보호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규에 지정된 요구를 충족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역별 소방소장
- 지역별 보건소장
- 주정부 관할 환경 보호 검사관

나. 입찰 신청 서류

○ [공공조달법 적용]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는 입찰서류, 중요한 조달 조건에 관한 양식 (Specification of Essential Terms of the Procurement; Terms of Reference; 폴란드 약어: SIWZ)을 참고하여 준비해야 한다.

○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안서 제출 기간 안에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의 동의 아래 FAX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때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는 공인 인증이나 동등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e-PUAP의 신뢰 프로필로 확인된 안전한 전자 서명이 날인되어야 한다.

○ 입찰 공고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업체는 제안서 또는 입찰 참여 신청서와 함께 발주처가 입찰 공고에 명시한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업체는 입찰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예: 영업권, 허가, 라이선스), 경제적 및 재정적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예: 재무 보고서), 그리고 기술적인 인력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예: 수행했던 실적 등)를 제출한다.

○ 국방 및 안전 분야의 조달 시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위기 상황 발생시 업체가 증가된 수요를 만족하고 발주 목적물 공급의 유지, 개선 또는 조정의 보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기술, 기기, 인력 수 및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확인서 또한 공급원에 대한 확인서, 추가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경우 지리적 문제해결 방안
- 업체 소속 국가의 법규에 대한 확인서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업체의 내부

규정에 대한 확인서

- 유럽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된 기관이 작성한 군사장비의 호환성을 확인하는 테스트 증명서 또는 보고서
- 정보보호, 조달 이행과 관련한 요구 조건의 충족을 보장하는 서류 및 확인서

○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포함되는 조달 같은 경우 발주처는 이러한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적합한 산업 안전 증명서 또는 기밀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입찰서류는 직접, 우편 서비스 또는 전자 통신 방식을 통해서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한다.

○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 내무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 및 안전 증명서를 포함한 특정한 활동 또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

○ 적합한 기술적인 능력과 조달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 폴란드 내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및 경제적 및 재정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 발주처는 제안하는 물품 공급이 제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외에도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하는 제품이 특정한 기준 및 기술 규격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인증서
- 공급될 제품의 샘플, 설명 또는 사진, 등 발주처 요청 자료
- 기밀 정보 보호 및 물품 공급을 확약하는 확인서 또는 서류
- 만약 업체가 외국국가 기업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급한 적합한 서류를 제출한다. 특정한 서류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업체는 공증인, 법원, 행정 기관, 직업 단체 또는 경제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입찰서류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정확한 제출 방식은 발주처가 업체에 예비 제안서 제출 초대장이나 협상 초대장에 제시한다.

다. 입찰 보증

○ [공공조달법 적용] 공공조달법을 적용할 때, 유럽연합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 같은 경우 발주처는 업체에 조달 예상 가격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입찰 보증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조달절차에서 발주처는 조달 예상 가격의 0.5%에서 3% 금액의 입찰 보증을 정한다.

○ [입찰 보증 방법] 입찰 보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현금
- 은행 보증(bank surety) 또는 공동 저금 보증, 이때 공동 저금 보증은 항상 현금 보증이어야 함
- 은행 지급 보증(bank guarantee)
- 보험 보증(insurance guarantee)
- 2000년 11월 9일 폴란드 기업 개발청(Polish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 폴란드 약어: PARP) 설립에 대한 법률에 정해진 주체의 보증

○ 입찰 보증은 신청서 또는 제안서 제출 기간 안에 제공해야 하며 은행 지급 보증 또는 보험 보증 서류는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요구에 따라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 및 사후관리

○ [계약의 기본원칙] 공공조달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조달법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계약은 민법을 준용한다.

○ [계약이행 보증]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업체는 계약이행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 금액은 공공조달법을 적용할 경우 발주처가 계약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침에 따를 경우에는 계약금의 0,5%부터 10%까지로 정한다.

○ 보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현금
- 은행 보증 또는(bank surety) 공동 저축 보증, 이때 공동 축금 보증은 항상 현금 보증이어야 함
- 은행 지급 보증(bank guarantee)

- 보험 보증(insurance guarantee)
- 2000년 11월 9일 폴란드 기업 개발청(Polish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 폴란드 약어: PARP) 설립에 대한 법률에 정해진 주체의 보증

○ [선수금 지급 – 공공조달법 적용]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조달 이행을 위한 선수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수금 제공이 가능하다. 업체가 비공개 협상 절차 또는 직접 계약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면 각 선수금의 금액이 조달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 발주처는 지급한 선수금 금액이 조달 가격에 2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선수금 지급 – 국방부장관 지침 적용] 선수금 지급 원칙은 2001년 5월 25일 폴란드 군대 개조 및 기술 개선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신문 76의 804번, 이후 개정 포함)이 정한다.

○ 발주처가 선수금 제공내용을 조달 서류에 제시하였거나 계약자가 발주처가 지정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선정되었을 경우 선수금 지급이 가능하다.

○ 각 선수금의 금액은 계약 대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선수금 지급 조건으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 [하도급 관련 – 공공조달법 적용] 발주처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도록 계약자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제시했을 경우 업체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업체는 하도급계약 입찰 절차를 통해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다.

○ 더불어, 업체는 자체적으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에게 맡길 과업의 일부를 제시하며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그 업체도 제시한다.

○ 두 경우 모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발주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하도급 관련 – 국방부장관 지침 적용] 발주처는 해외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기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단 하도급 업체는 조달 이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또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도급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김으로써 국가 안전의 기본적인 이익이 피해를 보지 않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하도계약 이행의 세부적인 조건은 발주처가 예비 및 최종 제안서 제출 초대 또는 협상 초대에서 정한다.

❍ 발주처는 하도급 업체가 입찰 참여 조건, 특히 안전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입찰절차 중에 또는 조달 이행 중에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

❍ [담보 책임] 업체의 담보 책임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의 원칙과 범위는 발주처가 지정한다. 공공조달법 및 국방부 장관 결정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조항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는 민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침은 발주처에게 품질 보증 및 담보책임 원칙과 이의 제기 절차를 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 민법상 물품을 인도한 후 2년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 5년 안에 물질적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업체는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주처는 하자를 보완하거나 물품을 하자 없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가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낮게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품질보증] 담보 책임과 동시에 발주처는 품질 보증에 의한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 품질 보증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물품을 인도한 후 2년간 유효하다. 품질 보증에 근거하여 발주처는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완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 해지] 공공조달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공공 이익에 상반될 경우 또는 지속적인 계약 이행이 국가 안전의 중요한 이익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3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 법규에 근거하여 업체는 계약을 이행한 부분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계약 자유 원칙에 기반하여 당사자는 발주처 또는 업체에 부여되는 계약 해지 권한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지 권한은 민법에 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발주처는 조달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전자 입찰 시스템

가. EU 공공조달 온라인 체계

○ 공공조달법에 의하면 발주처가 공공조달 계획을 공지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유럽연합 법률 신문(http://ted.europa.eu/) 또는 발주처 공식 사이트의 구매자 프로필에 공지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주로 입찰 제안서 또는 입찰절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대한 사전 정보를 공지한다.

○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조달은 전자경매(electronic auction)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전자입찰절차(electronic bidding procedure)를 적용한다.

- EU 공공조달 인터넷 안내 참조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 public-tenders/rules-procedures/index_en.html
- EU 공공전자조달 홈페이지 : http://www.e-pps.eu/view_category.php?catid=87

[그림 4] EU 공공조달전자체계 홈페이지

나. 자체 공공조달 온라인 체계

○ 발주처는 자체 공식 사이트(http://bzp.uzp.gov.pl/Out/Search.aspx)에도 입찰 공고와 관련 입찰서류를 공지하고 있다.

[그림 5] 공공조달청 공공입찰 공고화면

○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 입찰공고의 경우 공개적으로 발주할 시, 발주처 사무실 게시판에 공지하고 발주처 공식 사이트에 올린다.

Chapter 4

F A Q

Chapter 4. FAQ

Q1. 폴란드와의 무역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2015년 기준 대 폴란드 수출액은 28억 달러이고 수입액은 7억 달러입니다. 주요 수출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칼라TV, 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동기, 선박용 부품, 자동차부품 등이 있습니다.

Q2. 우리나라와 체결된 군사 혹은 방산 협정이 있습니까?

○ 2014년 5월에 '방산협력 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차 방산군수협력공동위원회를 폴란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군수품과 용역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상호수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Q3. 국방조달을 전담하는 조직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어떤 조직입니까?

○ 국방부 산하의 '군비검증단'에서 국방조달을 전담합니다. '군비검증단'은 제기된 군 소요에 대해 검증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며, 선행연구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관리 및 계약을 담당합니다.

Q4. 전자입찰체계가 있습니까?

○ 전자입찰체계는 없고 입찰공고를 게재하는 수준입니다.

Q5. 입찰공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공공조달법을 적용받는 입찰공고는 공공조달청의 공식 사이트 (http://bzp.uzp.gov.pl/Out/Search.aspx) 혹은 유럽연합의 법률신문 부록 사이트 (http://ted.europa.e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자체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장관 지침을 적용받는 입찰공고는 발주처의 사무실 게시판이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입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폴란드에서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내무부가 요구하는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업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Q7. 입찰신청 시 특별히 유의하거나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습니까?

- 국방조달은 공공조달법 적용을 받거나 국방부 장관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입찰절차가 서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입찰이 공공조달법 적용을 받는지 국방부 장관 지침을 적용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관련 처벌규정으로는, 민법상 물품을 인도한 후 2년 또는 부동산 같은 경우 5년 안에 물질적인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업체는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주처는 하자를 보완하거나 물품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품질 보증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물품을 인도한 후 2년간 유효합니다. 품질 보증에 근거하여 발주처는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완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8. 입찰신청서류는 어떤 식으로 제출합니까?

- 공공조달법을 적용받은 입찰의 경우, 입찰서류는 직접, 우편 서비스 또는 전자 통신 방식을 통해서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제출 방식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 국방부 장관 지침을 적용받은 입찰의 경우, 입찰서류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나 정확한 제출 방식은 발주처가 업체에 예비 제안서 제출 초대장이나 협상 초대장에서 제시합니다.

Q9. 국방 분야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품질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별도의 국방품질인증제도 및 담당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서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10.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제약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제도적으로는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데 특별한 제한조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권 획득 요건이 자국인 또는 장기 체류자로 제한되어 있고, EU국가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부 록

1. 시장 진출 환경
2. 시장 진출 전략
3. 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

▬ 부 록

1. 시장 진출 환경

가. 주요 장비 노후도 현황

○ 육군 교체 예상 노후 장비는 다음과 같다.

- 기동/장갑차량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2026년내 BRM-1 장갑전투차량 1종 도태 예상
- 화포장비의 장비수명을 4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2026년내 122mm 2S1(M-1974) 자주포 1종 도태 예상
- 대전차 무기의 장비수명을 40년으로 정할 경우 2026년까지 9K11/9K114 Malyutka(AT-3'Sagger') 계열 3종 및 기타 RPG-7V 로켓포 도태 예상
- 폴란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회전익 항공기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2026년내 Mi-24D 등 공격헬기와 Mi-17 의무헬기 등 5종 도태 예상

○ 해군 교체 예상 노후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수상함의 장비수명을 40년으로 정할 경우 2026내 Oliver Hazard Perry급 초계함과 Goplo(Notec) (Project207P/207DM)급 소해함 등 3종의 함정 도태 예상
- 해군이 운용하는 고정익 항공기의 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2026년내 M28B Bryza TD 수송기 및 M128B1R Bryza 1R 해상초계기 2종 도태 예상
- 회전익 항공기는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2026년내 구조용 Mi-14PL, 다목적용 W-3WA, Mi-14PL Strike 등 도태 예상

○ 공군 교체 예상 노후 장비는 다음과 같다.

- 공군 고정익 항공기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2026년내 SU-22M4와 MIG-29 전투기 및 MIG-29UB와 Su-22UM3K 훈련기 도태 예상
- 회전익 항공기의 장비수명을 30년으로 정할 경우 향후 2026년내 206L 다목적 항공기 3기와 UH-60L 다목적 항공기 등 4종 도태 예상
- 방공무기로는 지대공 미사일 S-125 Neva SC(SA-3'Goa'),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9K32/9k32Strela-2/2M(SA-7a/b'Grail) 등 6종 도태 예상

나. 예산 전망

○ 2020년 폴란드 국방부의 예산은 123억 2천만 달러 규모로 GDP의 약 2.2% 수준이다.

○ 폴란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물품을 보충하기 위한 자본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어 매년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폴란드 국방비 현황 및 GDP 대비율

2020년 불변가, 미화 백만 달러 기준

구분/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2024f
국방예산	10,071	10,978	11,442	**12,318**	11,923	11,411	11,016	10,656
국방비 증가율	/	9.01%	4.23%	**7.66%**	-3.21%	-4.29%	-3.46%	-3.27%
GDP 대비율	1.9%	2.0%	2.0%	**2.2%**	2.1%	1.9%	1.8%	1.7%

* f : 추정

○ 2020년 기준 기능별 국방비 중 운영유지비(Ops and Maintenance)는 26억 500만 달러, 획득비(Procurement)는 33억 3800만 달러 규모이다.

○ 운영유지비의 경우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에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방 예산 감소로 2022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획득비의 경우도 운영유지비와 비슷하게 2020년에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며,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표 2] 폴란드 예산항목별 국방비 지출 현황

2020년 불변가, 미화 백만 달러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2024f
획득비	2,571	2,698	2,891	**3,338**	3,096	2,954	2,872	2,779
운영유지비	2,124	2,522	2,519	**2,605**	2,626	2,513	2,427	2,454
연구개발비	249	273	287	**308**	298	286	276	267
인건비	4,514	4,709	4,998	**5,208**	5,132	4,912	4,743	4,482
기타	614	776	748	**859**	770	746	698	674
합계	12,089	12,996	13,462	**14,338**	13,943	13,433	13,039	12,680

2. 시장 진출 전략

가.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

○ 시장진출전략은 SWOT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강점과 기회를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는 할 수 있도록 중·단기와 장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3]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s)>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으로 양국간 경제.사회.국방분야 교류 활성화 가능 • 방산관련 협력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 체결국임 • K-9 자주포(차체) 수출 경험을 통해 타 분야로 확대 가능 • 한국의 국가 브랜드 및 방산기술 인지도 상승	**<기회(Opportunities)>** •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방비 투자도 증가 추세임 • 군 '기술현대화 계획'과 '2013~2022년 군사력증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2016년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현대화계획을 지속성 있게 시행 중 •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공개경쟁입찰 참여 기회 확대 가능성 • 2017. 9월 폴란드방산전시회(MSPO)에 한국이 Leading 국가로 참가 예정
<약점(Weaknesses)> • 외국기업의 영업권 취득 시 내국인 혹은 EU국가 대비 불리 • EU 회원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의 첨단무기 선호 • 미국, EU 등 주변국 대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비용 상승 가능성 높음 • 국방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정보 빈약 (언어 장벽 및 정보수집 체계 등)	**<위협(Threats)>** • EU 및 NATO에 편입된 이후 EU 및 미국에 대한 연대감이 높아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 • 절충교역법 개정으로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현지생산 우선 적용 등 높은 수준의 절충교역 요구 • 지상·해상·항공 분야 방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관련된 한국 방산품 직수출 제한됨 • 선진 다국적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 거점 선점으로 신규 진입 불리

나. 현지 국방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중·단기

○ 폴란드 국방조달시장은 한국 방산품의 신흥시장이다. 폴란드 군이 소요제기부터 획득 및 운영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조직,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폴란드의 기반 시설과 지형 및 자연 조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불필요한 개조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을 막을 수 있다.

○ 따라서 폴란드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 시 사전 준비를 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현지 방산 관련 전시회에 참석하여 현지 협력자인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능력을 검증하여 좋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함
-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조달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입찰 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별하여 수출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그 생산업체들를 시장개척단에 포함시켜 현지 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의 수출입지원시스템(d4b)에서 제공하는 입찰정보 시스템과 KOTRA 글로벌윈도우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를 통해 입찰공고 내용과 상거래 관습 등을 잘 확인한 후 수출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의 시장개척단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필요함

나. 폴란드 군 현대화 계획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방안 마련 - 중·단기

○ 폴란드 국방부는 2012년 12월 '기술 현대화 계획'과 '2013~2022년 폴란드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0월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획득계획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대공작전) : 중거리 방공체계(WIŁA, 2019~2022년), 단거리 방공체계(NAREW, 2021-2022년), 휴대형 대공미사일(PIORUN, 2017-2022년) 등
- (기갑) : Leopard Tank 2A4 현대화(2018-2021), 경전차(GEPARD, 2022년부터), 보병전투차량(BORSUK, 2021년부터) 등
- (개인전투장구) : 개인전투 장구류
- (순찰, 정찰 전력) : 정찰차량(MIJA, 2020-2022년), 경무장 정찰수송차량(KLESZCZ, 2021-2022년), 원거리 체계에서 수집된 정보자산 수집, 보관, 처리 민 분배 체계(PAJ-K, 2018-2022년) 등
- (지역방어부대) 통신장비(2017-2022년), 야시경(2017-2019년) 등
- (해양전력) : 기뢰제거함(KORMORAN Ⅱ 3척, 2016-2021년), 연안경비함

(MIECZIK, 2021-2026년), 잠수함(ORKA, 2024-2026년) 등

- (항공전력) : 고등훈련기(2016-2022년), 다목적 헬기(2018-2022년) 등

❍ 따라서 폴란드 군이 필요로 하는 제품 또는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완제품이나 부분품,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등 통한 다양한 수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K-9 자주포 수출경험을 활용한 시장영역 확대 - 중·단기

❍ 폴란드에 K-9 자주포 차체를 수출하면서 한국산 방산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기술을 활용해 자체 자주포 생산뿐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도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따라서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무기체계에 부합하는 기술을 찾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 높은 절충교역 요구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폴란드 방산그룹(PGZ) 및 중앙설계·기술국(WCBKT)와 협력 방안 강구 - 장기

❍ 폴란드는 군현대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자국의 방산능력을 확충하려고 높은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 폴란드 정부는 군사장비 개발 및 생산을 위해 Polish Armaments Group(Polska Grupa Zbrojeniowa (PGZ SA))과 Central Military Bureau of Design and Technology(Wojskowe Centralne Biuro Konstrukcyjno-Technologiczne SA(WCBKT S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PGZ SA는 폴란드 정부 소유 방산업체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임
- WCBKT SA는 1980년 폴란드 국방부가 정부 소유 방산업체들을 통합하여 항공기 지원장비 및 시뮬레이터, 전차와 장갑차를 위한 훈련장비 등을 설계 및 생산하는 업체임

3. 방산수출 통제 및 허가 절차[4)5)]

가. 방산수출 통제/허가 개념 및 관련 법규

○ [수출통제/허가의 개념] 국제평화, 국가안보, 기술보호 등을 위해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와 관련한 기술의 수출, 경유, 환적, 중개 등의 행위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수출통제/허가 대상품목]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지정한 방산물자, 전략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

[표 4]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 고시
방산물자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일반 +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관리규정 145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방산수출 통제/허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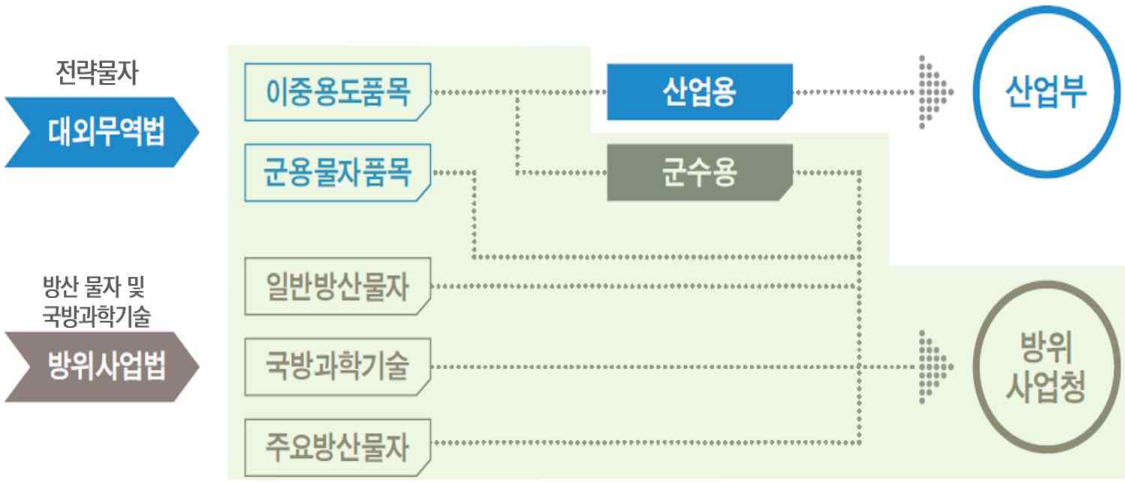

[그림 6]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나. 방산수출 통제/허가 절차

4) 방위사업청, 2019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
5)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 길라잡이

○ 방산수출 허가 절차는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로 구분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

○ 수출 통제/허가 심사 기준은 수출 허가 대상(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등) 여부,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저해 및 군사·외교적 민감성, 수입국의 기술수준 및 품목/기술의 유출가능성, 수입자/최종사용자/사용목적의 신뢰성, UN등 국제체제 제재 대상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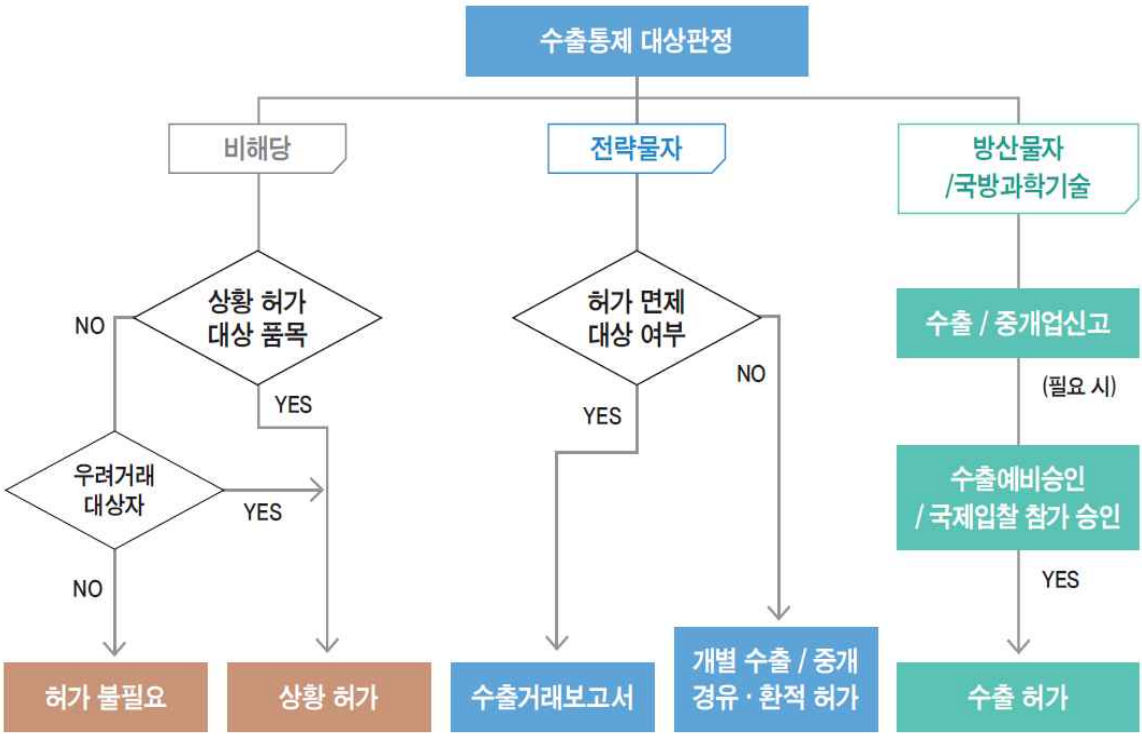

[그림 7] 수출 통제/허가 처리 절차

○ [수출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공 통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등 • 최종사용자 증명서 • 수출 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기 타	•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 최종 수하인 진술서 • 최종 사용자의 영업여부 확인 가능한 확인서	• 기술 보유 기관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서 • 외국정부의 허가 필요시 해당 국가의 허가서 • 수출 시 국내외 파급효과 및 납품일정

[표 5] 수출허가 제출 서류 목록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 수출업·중개업 신고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 중개 포함)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국제입찰참가 승인 신청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예비승인 신청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수출허가 신청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수기 접수 등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 에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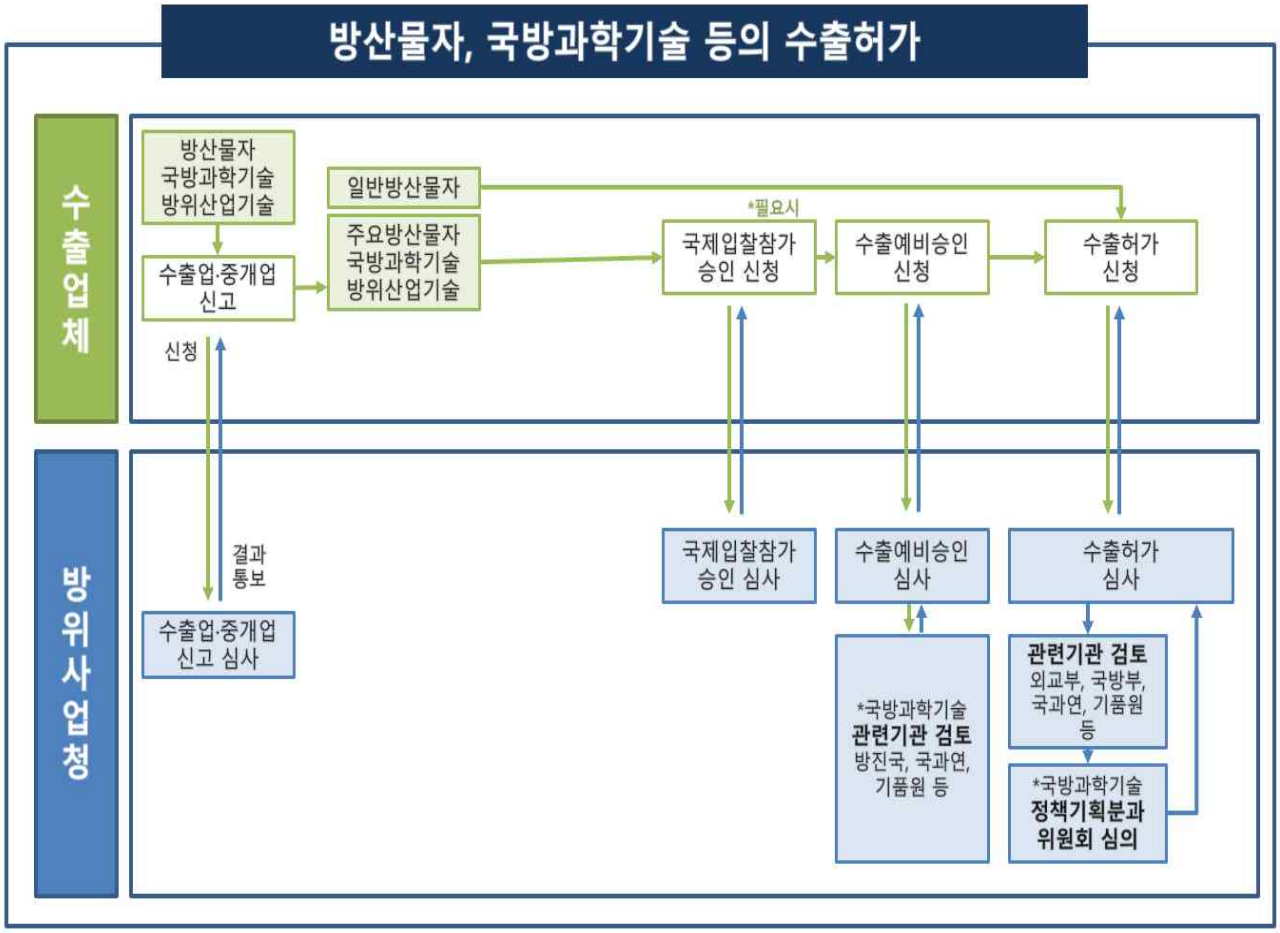

[그림 8]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상세 절차 및 수행 기관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의 경우 전략물자 대상여부 및 전략물자 대상 품목 확인을 선행해야 함

- 수출하려는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품목 또는 군용물자 대상품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 가능
- 자가판정은 2020.6.19.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판정을 할 수 있음
- 전략물자 대상여부 자가판정은 품목에 따라 신청처가 아래와 같이 달라짐
  - 군용물자품목(ML1~ML21) 자가판정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에서 신청
  -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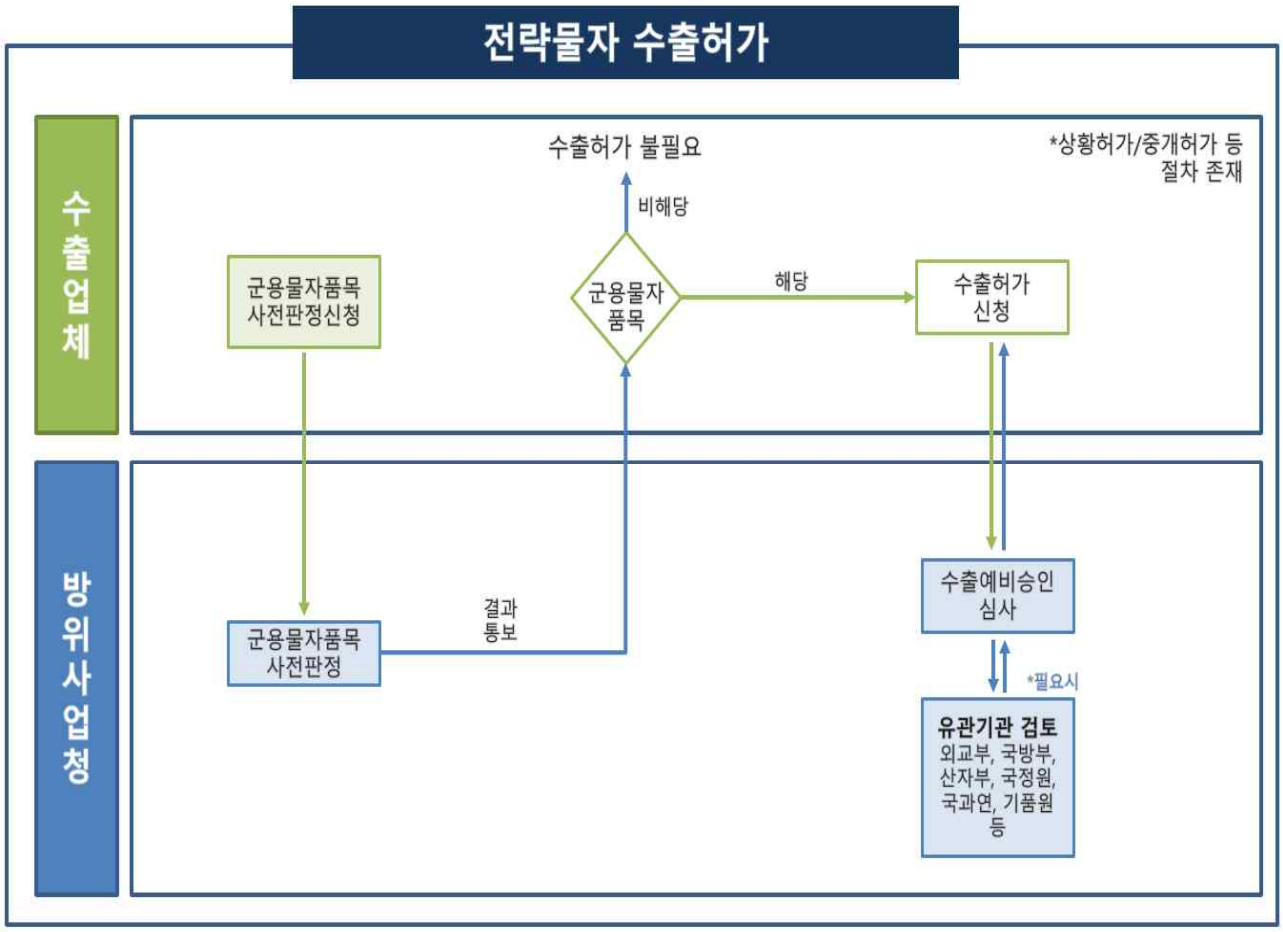

[그림 9] 수출 통제/허가 대상 품목 분류 및 관련 규정

폴란드 국방조달시장 진출가이드북
Polish Defense Market Entry Guidebook

최초 발행 : 2016. 11.
개정 1판 발행 : 2020. 1.
개정 2판 발행 : 2020. 10.

작 성

성 명	분 야	전화번호	E-mail
최준화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86	jchoi@dtaq.mil

참여전문가 (가나다순)

검토 및 자문

확 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수출지원2팀장 선임연구원 정유진

국방기술품질원
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